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변조하거나 생활법령정보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프랜차이즈(가맹계약)]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사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의 등록, 가맹금 예치 외에 계약해지절차, 계약갱신 등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법령이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1
1. 가맹사업 개관	4
1.1. 가맹사업	4
1.1.1. 가맹사업의 개념 및 내용	4
2. 가맹계약 체결 준비	7
2.1. 정보공개서의 확인	7
2.1.1. 정보공개서의 개념 및 작성원칙	7
2.1.2.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8
2.1.3. 정보공개서의 제공	13
2.2. 가맹금의 예치	16
2.2.1. 가맹금의 개념	16
2.2.2. 가맹금의 예치	17
2.2.3. 예치가맹금 대체제도	18
2.2.4. 가맹금의 반환	20
2.3. 가맹거래사 제도의 이용	21
2.3.1. 가맹거래사	21
3. 가맹계약의 체결 및 사업의 유지	24
3.1. 계약의 체결	24
3.1.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24
3.1.2. 가맹계약의 체결	28
3.1.3. 예치가맹금의 지급 및 반환	31
3.2. 가맹사업 시 준수사항	33
3.2.1.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33
3.2.2.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34
4. 가맹사업의 갱신 및 해지	47
4.1. 가맹계약의 갱신	47
4.1.1. 가맹계약의 갱신	47
4.2. 가맹계약의 해지	48
4.2.1. 가맹계약의 해지	48
5. 분쟁 등의 해결	51
5.1.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	51
5.1.1. 분쟁조정	51
5.1.2. 동의의결 신청	55
5.1.3. 손해배상 청구	57
5.2. 행정제재 등	57
5.2.1. 시정조치	58
5.2.2. 시정권고	60

1. 가맹사업 개관

1.1. 가맹사업

1.1.1. 가맹사업의 개념 및 내용

가맹사업의 개념

가맹사업의 개념

‘가맹사업’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이나 용역을 판매하며,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해 가맹본부로부터 지원·교육과 통제를 받는 대가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을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 포함)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

※ ‘상호’란 상인이 영업활동에 있어서 자신을 외부에 나타내는 명칭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상인이 아닌 사업자나 사업의 명칭과 구별되고,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상표나 영업의 대외적인 인상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인 영업표와 구별됩니다.

기본적 상행위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은 ‘상호, 상표 등의 사용 허락에 따른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기본적 상행위의 일종입니다(「상법」 제46조제20호).

가맹사업의 조건

가맹사업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 영업표지의 상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가 독립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가능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사업과 무관한 상품 등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이 아닙니다.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

√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가맹사업이 아닙니다.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에 대가로 가맹금 지급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도매가격 이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도 가맹금 지급에 해당합니다.

계속적인 거래관계

√ 일시적 지원만 하는 경우는 가맹사업이 아닙니다.

가맹사업 유사개념과의 구분

다음과 같은 형태의 상거래 또는 상인은 “가맹사업”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위탁매매인 : 자기의 이름으로 물건을 판매하여 생기는 이익이나 손해는 다른 자에게 속하게 하고, 자신은 판매에 따른 일정한 수수료를 가지는 자를 말합니다(「상법」 제101조).

대리상 : 자기가 상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인을 위하여 거래를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상법」 제87조).

체인사업 :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스스로의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함)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 가맹사업에는 패스트푸드·제과점 등과 같은 음식점업, 안경·문구류 등 생활용품사업, 등산·스키 등 스포츠사업, 학원 등 교육관련사업 등이 있습니다.

가맹사업의 당사자

가맹희망자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가맹지역본부”는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고,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며,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이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교육하거나 통제하는 등 가맹본부의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가맹점사업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즉,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가맹점사업자가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가맹점운영권”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해서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가맹본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하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맹본부가 많은 가맹점사업자를 직접 관리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역별로 가맹본부를 두기도 합니다.

가맹사업 관련 법령의 적용범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배제

가맹금 총액이나 연간 매출액이 다음에 해당되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

찾기 쉬운 생활법령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 동안 가맹본부에 지급한 가맹금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 (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말함) 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영점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다만,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5항)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을 개설하여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직영점의 매출액 포함) 미만인 경우

※ 이 경우의 금액산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제.)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경우	①가맹본부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②가맹본부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 2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상의 과세표준과 면세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사업을 시작한 때부터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한 때까지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을 ②의 금액으로 봄

예외

위와 같이 가맹금 총액이나 연간 매출액이 일정한 금액 또는 규모에 미달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은 적용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금지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가맹금의 반환에 관한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2. 가맹계약 체결 준비

2.1. 정보공개서의 확인

2.1.1. 정보공개서의 개념 및 작성원칙

정보공개서의 개념

정보공개서의 개념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계약의 해제·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아 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로서, 가맹사업거래에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의 작성원칙 및 내용

정보공개서의 작성원칙(「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영업표지별로 별도 작성되어야 합니다.

표지, 목차 및 정보공개사항으로 구성합니다.

정보공개서의 내용

정보공개서에 수록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 각 호).

정보공개서의 표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지원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음)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교육·훈련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함)

가맹본부의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말함) 현황(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위 항목에 수록되는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설명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의 가맹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믿을 수 있나요?
Q. 정보공개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다 믿을 수 있나요? 내용의 사실 여부가 불안하다면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나요?
A. 가맹본부가 실수로 내용을 빠뜨리거나 고의로 거짓된 내용을 제출할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등록과정에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있지만 그 내용의 사실 여부까지 모두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거나 확인하려 할 경우 가맹점(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까운 지점, 직영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먼저 창업을 한 사람에게 가맹본부가 약속한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래도 불안하다면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정보공개서의 내용은 물론 가맹본부의 신뢰도, 점포입지, 사업전망 등 다양한 사항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2.1.2.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정보공개서의 등록

신규등록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함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고 함)에 등록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

정보공개서(문서 형태의 정보공개서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자적 파일도 제출)

바로 전 3년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맹본부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전 3년간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찾기 쉬운 생활법령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운영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대표자, 소재지, 가맹계약 체결일 및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함)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근무 중인 임직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정보공개서 내용과 관련 있는 서류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서류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의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2항) .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
- 2)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법인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 3) 사업자등록증(정보공개서 등록증을 내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하거나 신청인이 제출할 수 있음)

※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2)와 3)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3)은 사본]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신청이 있으면 등록신청일부터 30일(취소된 가맹본부가 다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등록증을 내주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3항 전단) .

변경등록

가맹본부는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의 기한 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제3항, 별표 1의2 및 별지 제4호서식) .

구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변경 기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전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나목(가맹본부와 관련된 정보만 해당), 다목부터 마목까지, 사목(대표자와관련된정보만 해당) 및 자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변경등록사항	시행령」별표 1 제4호: 전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 차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3호: 자목1) 및 2)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5호: 가목, 나목1)·3) 및 다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6호: 라목부터 차목까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8호: 전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9호: 전체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 바목, 아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3호: 다목부터 아목까지, 자목 3) 및 차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5호: 나목2)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6호: 가목 및 나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0호: 전체	매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다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신청할 수 있음

※ 다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찾기 쉬운 생활법령

- 1) 변경된 정보공개서
-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정보공개서 등록증 (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신청서의 처리

공정거래위원회는 변경등록신청인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가맹본부에게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제2항 및 제5조의2제3항).

변경신고

가맹본부는 등록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한 내에 정보공개서 변경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단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제5항, 별표 1의2 및 별지 제4호서식).

구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변경 기한
변경신고사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정보만 해당), 사목(대표자 이외의 임원과 관련된 정보만 해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차목 및 카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7호: 전체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신청서의 처리

변경신고의 처리절차는 접수 → 검토 → 기안·결재(신고·수리) → 등록증 변경사항 기재 순이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등록증을 재교부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의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것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3조제7항제1호).

등록거부 또는 변경요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한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

정보공개서나 그 밖의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않은 경우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찾기 쉬운 생활법령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해당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경우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당시 해당 가맹본부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임원이 직영점을 운영한 모든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봄)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다음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 등을 받거나 신고·등록 등을 한 경우
2. 가맹본부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업종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경우
3. 그 밖에 위 1. 및 2.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록취소

다음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가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 특히,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제2항).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
- 2)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3)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의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

가. 정보공개서의 표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 가맹본부의 일반현황[「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가목, 나목(가맹본부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 다목부터 바목까지, 사목(대표자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 아목부터 차목까지]

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나목부터 카목까지)

라.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

마. 가맹점사업자의 부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

바.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6호)

사.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

아.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9호)

- 4) 가맹본부가 폐업 신고를 한 경우

- 5)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공개서의 공개

정보공개서의 공개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가맹본부가 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

이 경우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해당 가맹본부에 미리 통지해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4항).

다만,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은 공개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

조의2제3항 단서) .

※ 가맹희망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www.ftc.go.kr/>)에서 모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3. 정보공개서의 제공

정보공개서의 제공

가맹본부 등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나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 포함)는 가맹희망자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다음과 같이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 이 경우 다음의 모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①부터 ③까지의 사항은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함)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 ①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 ② 가맹희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③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 ④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의 제공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제공하는 방법

가맹본부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게시한 후 게시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는 방법(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읽어 본 시간을 그 가맹희망자 및 가맹본부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이동통신단말 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이 경우 가맹본부는 전자우편의 전자적 파일의 발송시간과 수신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해야 함)

※ “가맹중개인”은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거나 가맹계약을 준비하거나 체결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

※ 가맹희망자가 위 ③ 및 ④의 방법으로 정보공개서를 받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문서의 형태로 인쇄나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공개사항의 일부에 대하여 별도의 문서로 작성된 설명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설명서에 수록되는 정보공개사항의 목차는 정보공개서에 수록되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찾기 쉬운 생활법령

광역시·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본문).

※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단서).

변경된 중요사항 제공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가맹계약 체결 전에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전자적 파일로 제공하는 방법 등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의 금지 행위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의 금지 행위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못했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 여기서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로 보는 날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최초로 예치한 날 또는 최초로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입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1호).

※ 가맹금 예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맹금의 예치-가맹금의 예치-예치가맹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처분을 받을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제35조 및 제41조제3항제2호).

허위·과장된 정보 등의 제공금지

허위·과장된 정보 등의 제공금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않은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위의 행위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찾기쉬운 생활법령

1. 중요사항을 적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금전, 상품 또는 용역 등이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경우에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위의 행위와 같이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정보의 서면제공 등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의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다음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함)으로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제5항) .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의 수가 100 이상인 가맹본부

※ 예상매출액의 범위는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확정된 범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그 매출액의 최고액은 그 매출액의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

※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 .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이 권장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

가맹본부가 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다음의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근거가 되는 다음의 자료

1. 산출근거가 되는 가맹사업의 점포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의 수
2. 해당 가맹사업의 전체 점포 수 대비 가목에 따른 점포의 수
3. 가목에 따른 각 점포와 점포예정지와의 거리

최근의 일정기간 동안에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이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그 비율(최근의 일정기간에 대하여는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표시해야 함)

찾기 쉬운 생활법령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비치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위반 시 제재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및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비치하지 않거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3조제6항제2호 및 제3호).

2.2. 가맹금의 예치

2.2.1. 가맹금의 개념

가맹금의 정의 및 형태

가맹금의 정의 및 형태

“가맹금”이란 그 이름이나 지급의 형태가 어떻든 간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다음의 대가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본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해 지급하는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대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대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상표 사용료, 리스료, 광고 분담금, 지도훈련비, 간판류 임차료·영업지역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정액 또는 매출액·영업이익 등의 일정 비율로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 다만, 가맹본부가 취득한 자신의 상품 등에 관한 「특허법」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가는 제외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가맹금에 포함되지 않는 대가

찾기 쉬운 생활법령

가맹금에 포함되지 않는 대가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다음의 대가는 가맹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단서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상품권 발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나 할인금

소비자가 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사용하거나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지급수단 발행회사나 지급결제 대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나 할인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이나 부동산의 임차료의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절한 도매가격

※ 다만, 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통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임차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가맹본부가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을 말합니다.

그 밖에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금전으로서 소비자가 제3의 기관에 지불하는 것을 가맹본부가 대행하는 것

2.2.2. 가맹금의 예치

예치가맹금

가맹금 예치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대가를 예치가맹금 명목으로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을 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계약의 체결 이전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계약의 체결 이전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

※ 다만, 2008년 8월 4일 이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나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예치기관에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단서 및 [부칙\(제8630호, 2007. 8. 3.\) 제1조](#)].

가맹금의 예치기관

예치가맹금을 예치 받을 수 있는 예치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7).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은행법」에 따른 은행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예치가맹금의 예치방법 등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금예치신청서를 받아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은행 등에 가맹금을 예치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본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8제1항·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

예치가맹금의 귀속에 대한 안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예치신청서를 교부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이 가맹본부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3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8제3항).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가맹금예치증서의 수령

가맹금예치증서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면 예치기관의 장으로부터 가맹금예치증서를 교부받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8제5항 및 별지 제6호서식).

위반 시 제재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제1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2조).

2.2.3. 예치가맹금 대체제도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찾기 쉬운 생활법령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하 함)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

보험계약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기 위하여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거짓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3항)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보상에 적절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4항)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요건

가맹본부가 체결하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은 다음의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7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의 불이행 등으로 발생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일 것

피보험자·채권자 또는 수익자는 해당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할 예정인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자로 할 것

계약금액은 예치가맹금 이상으로 할 것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의사표시 방법을 제한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지나친 입증책임을 지우지 않을 것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보상의 범위나 보험자·보증인·공제조합 또는 가맹본부의 책임을 한정하지 않을 것

계약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나 손해를 줄 염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을 두지 않을 것

보험금·보증금 또는 공제금은 해당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할 예정인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것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표지의 사용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5항)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6항) .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찾기 쉬운 생활법령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제3호).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으로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기관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2항).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유형
1. 인테리어 시공 상의 하자과 과다한 비용징수 2. 원부자재 가격의 부당한 책정 3. 상권분석의 실패 4. 부당한 광고비용의 청구 5. 물품 등 공급의 지연 6. 영업지역의 침해 및 유사 가맹점의 설치 7. 부실한 교육과 신상품 개발의 미비 등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http://www.ftc.go.kr/)>

2.2.4. 가맹금의 반환

가맹금의 반환요구 사유

가맹금의 반환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나 가맹상담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는 7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고 제공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고 제공한 경우에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빠진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찾기 쉬운 생활법령

※ “가맹사업의 중단일”이란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중단일을 통지하는 경우 : 그 통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도달된 날,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통지함이 없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 등의 거래를 10일 이상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거래재개일을 정하여 거래재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 그 서면으로 정한 거래재개일을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가맹금의 반환요구 방법

가맹금의 반환요구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의 주소·성명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사실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사실과 그 일자

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금액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 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날짜

가맹금의 반환시기

가맹금의 반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2.3. 가맹거래사 제도의 이용

2.3.1. 가맹거래사

가맹거래사 제도 및 가맹거래사 자격의 취득

가맹거래사 제도

가맹거래사 제도는 가맹사업이라는 특수한 영역에 능력과 자질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여 가맹사업 희망자의 무경험·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저렴한 비용을 통하여 가맹희망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가맹거래사 자격의 취득 및 제한

찾기 쉬운 생활법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을 합격한 후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가집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맹거래사가 될 수 없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가맹거래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시험은 무효가 되고, 그 시험의 응시일부터 5년간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

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 금지

가맹거래사는 자기의 등록증을 다른사람에게 빌려줘서는 안되며,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빌려서는 안됩니다. 또한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 행위를 알선해서도 안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

※ 이를 위반해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 .

가맹거래사의 업무 및 책임

가맹거래사의 업무

가맹거래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수정이나 이에 관한 자문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자문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이나 이에 대한 자문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및 의견의 진술

정보공개서 등록의 대행

가맹거래사의 책임

가맹거래사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

찾기 쉬운 생활법령

가맹거래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의 보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

가맹거래사의 등록취소와 자격정지

가맹거래사의 등록취소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을 한 가맹거래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가맹거래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다만,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단서) .

※ 가맹거래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

가맹거래사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납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

가맹거래사의 자격정지

가맹거래사는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하며, 이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지 않은 가맹거래사는 그 자격이 정지됩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고 갱신등록을 한 때에는 그 때부터 자격이 회복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 .

3. 가맹계약의 체결 및 사업의 유지

3.1. 계약의 체결

3.1.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맹계약 검토 시 유의사항

가맹계약서 검토 시 유의사항

가맹계약자는 보통 가맹본부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를 가지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가맹본부는 이러한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맹계약자의 정당한 이익이나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도록 계약의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4.12.9. 선고 93다43873 판결 참조](#)) .

가맹계약서의 공정성

가맹계약서가 다음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가맹계약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가맹계약자가 보통의 가맹계약의 영업이나 거래의 형태 등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가맹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계약자의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면책조항의 금지

가맹계약서의 내용 중 가맹본부의 책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

가맹본부,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가맹계약자에게 떠넘기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가맹계약자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계약목적물에 관한 견본이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상당한 이유 없이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

가맹계약서의 내용 중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

법률에 따른 가맹계약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가맹본부에게 부여하여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법률에 따른 가맹본부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가맹계약자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가맹계약자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가맹본부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채무의 이행

가맹계약서의 내용 중 채무의 이행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권익 보호

가맹계약서의 내용 중 가맹계약자의 권익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

법률에 따른 가맹계약자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가맹계약자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가맹계약자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가맹본부가 업무상 알게 된 가맹계약자의 비밀을 상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의사표시

가맹계약서의 내용 중 의사표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

일정한 행위를 했거나 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로 가맹계약자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조항

※ 다만, 가맹계약자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를 했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런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가맹계약자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가맹계약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가맹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가맹계약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맹본부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대리인의 책임

가맹계약자의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맹계약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리인이 대신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서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3조).

소송 제기의 금지

가맹계약서의 내용 중 소송 제기 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계약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가맹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가맹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http://www.ftc.go.kr/\)](http://www.ftc.go.kr/)의 <민원참여/공지사항/프랜차이즈 창업 피해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는 가맹계약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 가급적 피해야 할 7가지 가맹본부 유형 >

가) 정보공개서가 없는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임원의 범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 및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등에 대한 설명, 가맹본부의 가맹점 수 등 가맹사업현황에 대한 설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 절차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기재한 책자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당수 가맹본부들이 정보공개서를 갖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가맹본부에 대한 더 이상의 관심은 절대사절입니다.

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고수익 보장 등으로 유혹하는 가맹본부

향후 수익전망을 제시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라면 반드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어떤 가맹점이 그런 정도의 수익을 얻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향후 분쟁이 제기되더라도 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다) 공짜 가맹금을 내세우는 가맹본부

가맹금에는 초기 가맹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 가맹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그대로 믿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수익종에는 초기 가맹금 외에 인테리어 등

찾기 쉬운 생활법령

매장설치를 대신해 주거나, 물품대·교재대 등의 명목으로 떼어가는 돈이 더 많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반드시 증빙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라) 일단 돈부터 요구하는 가맹본부

교육이나 교재비 명목으로 선금을 요구하는 가맹본부는 대부분 제대로 된 가맹점 관리보다는 일단 모집부터 하고 보자는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얼떨결에 돈을 선납하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부터 주고나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이를 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 너무 많은 브랜드를 가진 가맹본부

현실적으로 가맹본부의 수익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가맹비, 그 밖의 인테리어 비용 등 창업초기에 대부분 발생합니다. 제대로 된 브랜드 개발을 하려면 적게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한두달 만에 금방 만들어낸 브랜드는 그저 유행에 편승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브랜드 하나를 성공했다 하여 제2, 제3의 브랜드까지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물며, 어느 하나 성공한 브랜드 없이 자꾸 새로운 브랜드만 만들어내는 가맹본부를 믿기는 어렵습니다.

바) 가맹점 수가 너무 많거나 적은 가맹본부

가맹점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은 더 이상의 가맹점 개설이 어려우므로 기존의 가맹점에 대한 관리보다는 새로운 브랜드 개발이나 새로운 수익원을 찾는 원인이 됩니다. 새로운 브랜드 개발에 치중하다보면 기존 브랜드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크고, 한편으로는 기존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시도할 유인이 생기게 됩니다. 가맹점 수가 너무 적은 것은 아직까지도 상당한 위험이 있다는 의미이고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로 인해 피해를 볼 가능성 또한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 직영점 운영기간이 짧은 가맹본부

상당수 가맹본부는 스스로 직영점을 설립함과 동시에 체인 모집을 하기도 합니다. 직영점 운영을 통해 사업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 연혁 등을 확인하고, 직영점 운영기간과 운영 상태를 제대로 살펴서 충분한 사업성이 인정될 때 투자를 결심해야 합니다.

< 창업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 7가지 >

가)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게 담겨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의 돈을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정보공개서가 없는 가맹본부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공개서는 일정한 양식에 의해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본사와 물류시스템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사를 확인하는 순간, 계약하려는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장과 직원 서너 명이 대충 모여 일하는 본사에서 가맹점 관리를 제대로 해 줄 리가 없습니다. 아울러 대표의 경력에 대한 확인은 필수입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사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물류가 갖추어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제때 제대로 된 물품을 공급해 주느냐가 사업 성패의 관건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물류시스템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 반드시 기존 가맹점주에게 문의하십시오 !

가맹점주로부터 살아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김지 얼마 안 되는 가맹점과 계약한지 오래된 가맹점을 골고루 찾아보는 것도 지혜입니다. 최근에 생긴 가맹점으로부터는 창업 초기에 얼마나 제대로 지원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오래된 가맹점으로부터는 혹시라도 영업과정에서 본부의 횡포나 불공정행위가 없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점포를 내 놓으려는 가맹점주의 말은 액면 그대로

찾기 쉬운 생활법령

만어서는 안 됩니다. 빨리 점포를 정리하려는 욕심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라) 폐업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재무제표 상 수익률이 높다거나 재무상태가 좋다는 점만으로는 좋은 가맹본부라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거꾸로 해석한다면 얼마나 가맹점을 착취했는가에 대한 징표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가맹점의 폐업율입니다. 어느 정도의 가맹점을 모집해서 얼마나 잘 유지·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나중에 할 후회를 막는 첩경입니다. 불행히도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폐업율 자료를 정확히 제시하도록 할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마)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당수 프랜차이즈들은 대표이사 따로, 실제 운영자 따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시로 법인명을 바꾸거나 폐업과 신설을 반복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타납니다. 가맹점 모집을 한지는 오래되었는데 법인 설립은 최근에 이루어졌다면 일단 의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계약을 체결할 때는 A법인 명의로 하였다가, 일정 수가 넘으면 A법인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즉, 더 이상 A법인과 계약한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바) 분쟁조정협의회에 물어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는 프랜차이즈 분야의 각종 분쟁사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자기가 가입하려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한 분쟁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와 그 결과까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특히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해 주는 최우선기관입니다. 가맹금 반환이나 거래과정에서 가맹본부의 횡포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면 됩니다.

사) 가맹계약서는 아무리 꼼꼼하게 살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충분한지, 위약금 조항은 합리적인지, 상권보장과 관련하여 그 문구가 애매모호하지는 않은지, 재료 보급 등 물류시스템에 대한 사항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지, 계약해지의 사유가 합리적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1.2. 가맹계약의 체결

가맹계약서

가맹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19가지의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찾기 쉬운 생활법령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 기관에 예치해야 한다는 사항

√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함.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음의 사항

√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거래조건 변경협의 및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 2024. 12. 5. 시점에 존속 중인 가맹계약에도 적용되므로, 6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해야 함[「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556호, 2024. 6. 4.) 부칙 제2조]

√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서의 내용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는 서로 합의하여 가맹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 외에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른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불공정 조항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찾기 쉬운 생활법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는 경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가맹본부나 가맹본부의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법률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경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법률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정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법률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경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함에 있어 형식이나 요건을 갖추도록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경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가맹점사업자의 대리인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대리인이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해야 한다고 책임을 지우는 경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3조)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소재기를 금지시키는 경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 가맹계약의 조항이 위에 해당되어 무효인 경우, 그 가맹계약은 나머지 부분만 유효하게 존속되나,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과징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시킨 경우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제1항).

가맹계약서의 효력

가맹계약은 일방 당사자인 가맹본부와 다수의 상대방인 가맹희망자 간에 이루어지므로 거의 모든 계약이 약관에 의한 계약형식을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약관에 의한 가맹계약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약관”에 해당되어 같은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개별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찾기 쉬운 생활법령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약관의 조항과 다른 내용을 체결한 개별약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이나 「상법」의 적용을 받아 그 계약서의 내용대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함)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에,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봄)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가맹계약의 성립

가맹계약의 성립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들의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일치하면 계약은 성립하는데, 보통 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이나 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가맹계약도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이나 날인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보관의무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보관의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점사업자와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3조제6항제3호).

3.1.3. 예치가맹금의 지급 및 반환

예치가맹금의 지급

예치가맹금의 지급요청

가맹본부는 다음의 경우 예치기관의 장에게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3항).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가맹본부가 예치기관의 장에게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4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자는 예치가맹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항).

예치가맹금의 지급

가맹본부로부터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받은 예치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3항).

그러나,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예치가맹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3항제2호 단서).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가맹금 반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경우

예치가맹금의 지급보류 등

예치가맹금의 지급보류

예치기관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보류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5항).

- 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 나)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가맹금 반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등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지급보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지급보류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5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9제2항 및 별지 제8호서식).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나 그 밖의 분쟁해결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보류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5항).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될 때”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재결이, 시정조치나 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때에는 확정판결이 확정된 때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5항).

예치가맹금의 지급거부 등

가맹본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

가맹본부에 대하여 예치가맹금의 지급요청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5항제4호).

예치가맹금의 지급 등

가맹본부 또는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 등의 결과나 시정조치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가맹금지급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예치가맹금의 지급이나 반환을 요청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6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9제3항).

가맹본부 또는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는 지급이나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따라 예치가맹금을 지급받거나 돌려받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6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9제3항).

다만,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서를 첨부한 가맹금지급요청서로 예치기관의 장에게 반환을 요청한 경우, 해당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돌려받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7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9제4항).

3.2. 가맹사업 시 준수사항

3.2.1.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활동을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 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 나)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 다)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 라) 다)에 따른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 마)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 바) 취급하는 상품·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 사)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 아) 가맹점사업자의 업무현황 및 사)에 따른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의 허용
- 자)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금지
- 차)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 카)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

타) 영업표지에 대한 제3자의 침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표지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

3.2.2.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2).

- 1. 거래거절:**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유형	세부기준
영업지원 등의 거절금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기간 중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지원,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지원하는 물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금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한 계약해지의 금지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2. 구속조건부 거래:**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유형	세부기준
가격의 구속금지	1.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해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사전 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2. 그러나, 판매가격을 정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해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는 가격의 구속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래상대방의 구속금지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 이하 동일)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그러나 ①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②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③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의 거래를 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세부내역 및 그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이를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 ④가맹본부가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의 거래를 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세부내역, 가격, 수량, 품질 및 그 거래상대방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친 경우는 거래상대방의 구속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이미 존속 중인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그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556호, 2024. 6. 4.) 부칙 제3조].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금지	1.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지정된 상품 또는 용역만을 판매하도록 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그러나,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금지	1.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그러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거점지역을 정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에서의 판매책임을 다한 경우에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려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의 제한 금지	1. 위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그러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의 제한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가맹본부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되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3호),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면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해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행위가 허용됩니다.

유형	세부기준
구입 강제금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설비·상품·용역·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한 강요금지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금지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경영의 간섭금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인과 가맹점을 같이 운영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판매목표 강제금지	부당하게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불이익제공금지	위의 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4.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가맹본부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다음과 같이 정한 기준에 비해 과중하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5호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유형	세부기준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행위	계약해지의 경위 및 거래당사자 간 귀책사유 정도, 잔여계약기간의 정도, 중도해지 후 가맹본부가 후속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통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손해액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의 지연 시 지연경위,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전가행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물품의 원시적 하자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까지도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배상의무를 모두 부담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밖의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위의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행위 또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전가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의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5.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 가맹본부는 부당하게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을 통해 자기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5호).

위반 시 제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과징금 등을 받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4조, 제35조 및 제41조제2항제2호).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 영업지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제1항).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찾기 쉬운 생활법령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제2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

- √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 √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 위에서 열거한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제3항).

위반 시 제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영업지역을 침해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게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금지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의 점포환경개선 비용 부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간판 교체비용과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100분의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100분의 40

※ 다만,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계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함에 따라 드는 비용은 가맹본부의 부담에서 제외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제2호).

※ 또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가맹본부는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단서).

- √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찾기 쉬운 생활법령

위반 시 제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게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가맹본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이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이라 함)를 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 .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에 해당하는 행위

부당한 영업시간의 구속으로 보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 .

1.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위치한 상권의 특성 등의 사유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오전 1시까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저조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

위반 시 제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강요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게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

광고·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광고·판촉행사 실시에 대한 가맹사업자의 동의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체결한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함)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다음의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6제1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5제2항) .

광고의 경우: 100분의 50

판촉행사의 경우: 100분의 70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의 통보 및 열람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6제2항) .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 광고 또는 판촉행사 비용의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않거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3조제6항제7호) .

가맹본부는 광고·판촉행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열람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과징금 등을 받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제34조 및 제35조) .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

		치킨	피자	제과·제빵
신규 점포 거리제한		800m 이내 거리제한	1,500m 이내 거리제한	500m 이내 거리제한
리뉴얼	주기	7년	7년	5년
	가맹본부 비용지원	20%~40%지원	20%~40%지원	20%~40%지원
	기타	과도한 감리비등 제한	관련내용 없음	관련내용 없음
광고		연도별 총 광고비 사전 동의 -분기별 광고내역 송부 -세부내역 열람요구시 열람의무		관련내용 없음
판촉		원칙: 동의하는 가맹점만 판촉요구가가능 예외: 전체가맹점 참여가 불가피한 판촉행사의경우 70%이상 사전 동의 시만 가능		관련내용 없음
적용브랜드		비비큐·BHC·교촌 · 페리카나	미스터피자·도미노피자	파리바게트 · 뚜레쥬르

제과·제빵분야 모범거래기준 (2012. 4. 10.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구분	거래기준
적용대상	가맹점 수가 1,000개 이상이거나 가맹점수가100개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제과·제빵 분야 가맹본부

영업지역 보호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매장으로부터 반경 500m 내에 신규 가맹점 및 직영점을 출점할 수 없습니다. √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맹본부가 인근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 (1) 3,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가 새로 들어서거나, 300병상 이상의 대형종합병원에 출점하는 경우 (2) 철길, 왕복 8차선 이상 도로 등에 의해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신규 출점으로 인해 기존 가맹점의 고객들이 신규 출점한 가맹점으로 이용 점포를 전환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
------------	--

매장리뉴얼	1. 리뉴얼 주기 √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 (리뉴얼 시행 시 해당 리뉴얼 완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리뉴얼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1) 가맹점 귀책사유로 위생·안전 등의 문제로 리뉴얼이 불가피한 경우 (2) 가맹본부가 리뉴얼 공사비용을 모두 지원하는 경우 2. 비용부담 √ 매장의 확장이나 이전이 없는 리뉴얼에는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공사, 간판 설치비용 (다만, 설비·집기 교체비용도 가맹본부가 리뉴얼을 요구한 경우에는 20% 이상 비용을 지원)의 20% 이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 매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리뉴얼은 가맹점이 원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공사, 간판 설치비용 (다만, 설비·집기 교체비도 가맹본부가 리뉴얼을 요구한 경우에는 40% 이상 비용을 지원)의 40% 이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3. 가맹본부의 금지행위 √ 가맹본부는 리뉴얼 요구를 거부하는 가맹점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리뉴얼 시 부당하게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특정 업체와만 거래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가맹본부는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치킨·피자분야 모범거래기준 (2012. 7. 5.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구분	거래기준
적용대상	가맹점수가 1천 개 이상이거나, 가맹점수가 1백 개 이상이면서 매출액이1천억원 이상인 치킨 가맹본부 및 피자 가맹본부
영업지역 보호	1. 치킨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매장에서부터 반경 800m 내에 신규 가맹점 및 직영점을 출점할 수 없습니다. √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맹본부가 인근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 (1) 3,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가 새로 들어서거나, 300병상 이상의 대형종합병원, 대학교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2) 철길 등에 의해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 2. 피자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매장에서부터 반경 1,500m 내에 신규 가맹점 및 직영점을 출점할 수 없습니다. √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맹본부가 인근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 (1) 5,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2) 철길 등에 의해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3) 놀이공원 내 등 특수 상권 내에 출점하는 경우 (4) 배달전문매장 인근에 내점전문매장이 출점하는 등 기존 가맹점의 고객들이 신규 가맹점으로 거래를 전환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
--	--

매장리뉴얼	1. 리뉴얼 주기 √ 치킨·피자 가맹본부는 가맹점 영업개시일로부터 7년 (단, 내점판매 매출액 비율이 전체 매출액의 5% 이상인 매장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리뉴얼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비용부담 √ 매장의 확장이나 이전이 없는 리뉴얼에는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20% 이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 매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리뉴얼에는 리뉴얼 비용의 40% 이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 다만, 10년 이후 리뉴얼 시에는 가맹본부가 비용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가맹본부의 금지행위 √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가맹본부 이외의 업체를 통해 리뉴얼할 경우 통상 수준보다 감리비를 과도하게 수취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가맹본부와 리뉴얼 계약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가맹본부와 직접 리뉴얼 계약을 할 경우에는 인테리어 공사업체와 체결하는 도급계약서 및 도급 금액 정보를 해당 가맹점에 제공해야 합니다.
-------	--

광고·판촉 절차	1. 치킨·피자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광고비를 부담시키는 경우 가맹점으로부터 연도별로 총 광고비 부담액을 사전 동의 받아야 합니다. 2. 치킨·피자 가맹본부는 분기별로 광고집행의 구체적 내용을 가맹점에 통보하고, 광고내역을 통보받은 가맹점이 광고단가 등 세부원가 내용을 요구할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원칙적으로 가맹본부가 판촉행사를 할 경우 가맹점의 사전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판촉행사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다만, 사전동의한 가맹점만 참여하는 방식으로 판촉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판촉행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표를 통해서 판촉행사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이 찬성하는 행사만 진행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	--

그 밖의 준수사항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가맹계약기간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4. 가맹사업의 갱신 및 해지

4.1. 가맹계약의 갱신

4.1.1. 가맹계약의 갱신

가맹계약의 갱신요구권

가맹계약의 갱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 180일부터 90일까지의 사이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갱신의 거절

가맹계약의 갱신 거절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

-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즉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 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통상적인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갱신거절의 방법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의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의 사유가 적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찾기 쉬운 생활법령

13조제3항) .

가맹계약의 묵시적 갱신

가맹계약의 묵시적 갱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가맹본부가 다음에 해당하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가맹계약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단서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이 거절된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2. 가맹계약의 해지

4.2.1. 가맹계약의 해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해지

가맹계약의 해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민법」 제543조제1항) .

※ “계약의 해지”란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계약사항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일방적인으로 해지의 뜻을 밝혀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계약이 해지되면 그 이후부터 효력을 잃게 됩니다(「민법」 제543조제1항 및 제550조) .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그대로 유효하고,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1조) .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 가맹계약이 해지되면 상표사용권 등과 같은 가맹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의무는 종료되나, 이미 가맹본부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물품·용역대금 등과 같은 채권과 채무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해지권 제한

가맹계약 해지의 제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구체적인 계약위반 사실”과 “그 위반사실을 고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해야만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다음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가맹점사업자가 파산 신청을 하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①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②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③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해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제외)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법령에 근거해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제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 합산)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가맹본부가 시정 요구한 사항을 다시 1년 이내에 위반한 경우 가맹계약의 해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통지 없는 가맹계약 해지의 효력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가맹금의 반환

찾기쉬운 생활법령

가맹금의 반환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다음의 경우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고 제공한 경우에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빠진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가맹금 반환의 방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맹금의 예치-가맹금의 반환-가맹금의 반환요구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분쟁 등의 해결

5.1.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

5.1.1. 분쟁조정

분쟁조정의 절차

분쟁조정 절차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함)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제기된 분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처리합니다.

	분쟁조정의 신청 (분쟁조정신청서의 제출)	⇒	협의회의 회의	⇒	조정조서의 작성	⇒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결과 통보	
--	---------------------------	---	---------	---	----------	---	---------------------	--

분쟁조정의 신청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신청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 등 가맹사업당사자 (이하 “분쟁당사자”라 함)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항)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소

신청의 이유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

동일 사안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신청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소송사건의 번호

분쟁조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구비서류
① 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③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분쟁조정 신청

분쟁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여러 협의회에 중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협의회 중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이를 담당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1. 조정원 협의회
2. 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협의회
3. 가맹본부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협의회

시효중단의 효력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 본문).

중단된 시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7항).

1.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다만, 분쟁조정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 단서).

※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 의뢰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의회에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건의 조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신청의 보완 등

신청의 보완

협회의 위원장은 신청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보완을 요구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당사자에의 통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

협의회는 조정의 신청을 받는 즉시 그 조정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조정원 협의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도협의회는 시·도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소제기 등의 통지

분쟁당사자는 조정을 신청한 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합의를 한 때에는 즉시 협의회에 이러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분쟁조정신청 시의 유의사항

대표자의 선정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3항).

그런데,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 위원장은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당사자의 지위승계

협의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분쟁당사자가 사망, 능력의 상실 그 밖의 사유로 절차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승계신청을 받아 결정을 통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승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조정 거부 또는 중지

분쟁 조정

협의회는 조정 신청을 받거나 조정 의뢰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분쟁당사자로부터의 분쟁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가 조정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협의회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행위 또는 사건이 아래의 3.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회의 회의

기피신청

분쟁당사자는 공정한 조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의견의 진술 등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제7항) .

회의의 비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

분쟁당사자의 출석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6항) .

출석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

조정종료

조정 종료

협의회는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 .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 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는 90일)이 경과해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시정권고 및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않은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 및 제32조의3제2항) .

조정조서의 작성

조정조서의 작성 및 보고

협의회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조정조서의 사본을 첨부한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다만,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조정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

합의사항의 이행 및 이행결과 제출

찾기 쉬운 생활법령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해야 하고,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않은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지 않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조정조서의 효력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

조정결과 통보 등

조정결과와 통보

협의회가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종료하는 경우에는 조정원 협의회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도 협의회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에 조정의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관계서류 등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분쟁당사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

유용한 법령정보-2
Q. 조정이 성립된 경우 이행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A. 조정이 성립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조정기간 중에 그 이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행시기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되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합의서 내지 조정조서가 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지 못하므로, 신청인은 이를 첨부하여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별도의 소송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출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http://www.kofair.or.kr/goMain.do) -FAQ>

5.1.2. 동의를결 신청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의 동의를결 신청

“동의를결제도”란?

“동의를결제도”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시정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시정 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동의를결제도 보도자료(2021. 12. 9.) 참조].

동의를결의 신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해당

찾기 쉬운 생활법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해당 행위”라 함)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결,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동의를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 본문).

동의를결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를결을 하지 않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 단서).

아래의 죄 중에서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하는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제41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1조제3항)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위반해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경우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5를 위반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한 경우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을 위반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을 위반해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 경우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경우

동의를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동의를결 신청시 서면 기재사항

신청인이 동의를결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2항).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정방안
3.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방안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결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위의 2. 및 3.에 따른 시정방안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동의를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3항).

해당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가맹점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인정될 것

※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결은 해당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를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4항).

동의를결 이행계획 및 이행결과와 제출

동의를결을 받은 신청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의결에 따라 동의를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에 따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4항 및 제5항 준용).

동의를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의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를결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동의를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제1항).

동의를결의 취소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를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1. 동의를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2.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동의를결을 하게 되었거나,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를결을 받은 경우
3.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1.3.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책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본부 등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가맹본부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가맹본부 등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1항 본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제1항).

손해배상액의 인정 특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등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5조).

5.2. 행정제재 등

5.2.1. 시정조치

시정조치

시정조치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등의 시정조치를 받게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

예치가맹금 예치 규정 위반, 거짓 등의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요청(「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및 제4항)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법령에서 정한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등(「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부당하게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한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한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

부당하게 영업지역을 침해한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

가맹점사업자에게 보복조치를 한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5)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가맹점 사업자의 요구가 있음에도 이를 열람할 수 없도록 한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6제2항)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가맹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5항)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등(「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3항 및 제6항)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 및 통지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외에 그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

시정조치 불응 시 제재

가맹본부가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고 그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2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2조).

과징금의 부과

과징금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외에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본문).

예치가맹금 예치 규정 위반, 거짓 등의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요청(「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및 제4항)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법령에서 정한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등(「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부당하게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한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한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

부당하게 영업지역을 침해한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

가맹점사업자에게 보복조치를 한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5)

가맹점 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함에도 그 내역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가맹점 사업자의 요구가 있음에도 이를 열람할 수 없도록 한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6제1항)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가맹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5항)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등(「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3항 및 제6항)

※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영업중단 등으로

찾기 쉬운 생활법령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위반기간 등을 확정할 수 없어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3항).

과징금의 산정방법

과징금은 매출액[해당 가맹본부가 위반행위(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동안 관련 가맹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항).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3항).

영업중단 등으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위반기간 등을 확정할 수 없어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소송의 제기

소송의 제기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제기기간

가맹본부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

소송의 관할

행정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0조).

5.2.2. 시정권고

시정권고

시정권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그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시정권고의 절차와 효력

시정권고의 절차

시정권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에게 법위반내용, 권고사항, 시정기한, 수락여부 통지기한, 수락거부 시의 조치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는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이 서면에는 가맹본부가 시정권고를 수락하면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는 뜻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시정권고를 받은 가맹본부는 그 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시정권고의 효력

시정권고를 받은 가맹본부가 그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봅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